

제6회 인권경영위원회 회의결과

- 일 시 : 2024. 12. 16.(월), 11:00~
- 장 소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 소회의실 및 화상회의
- 참석자 : 5명(참석인원) / 5명(재적인원) (간사 제외)
 - 위원장 : 신운철 경영기획본부장
 - 위 원 : (내부) 정원웅 경영지원본부장
(외부) 강혁준 본부장 (세계김치연구소)
최보경 팀장 (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
권석현 매니저 ((주)코닝정밀소재)
 - 간 사 : 이창연 경영기획실장

□ 회의결과

심 의 안 건	결 과	비고
<의결안건 제1호>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심의	원안 의결	
<의결안건 제2호> 2024년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심의	원안 의결	

제6회 인권경영위원회 회의결과 세부내용

[심의안건 1호]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심의

□ 회의결과 : 원안 의결

- 연구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
-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총 10개 분야(인권경영이슈)별 158개 세부지표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
□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

- (종합결과) 2024년 인권영향평가 진단결과, 158개 지표 中 “예” 133건, “보완필요” 4건, “아니요” 5건으로 나타나 **우리원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 없이 우수하게 운영**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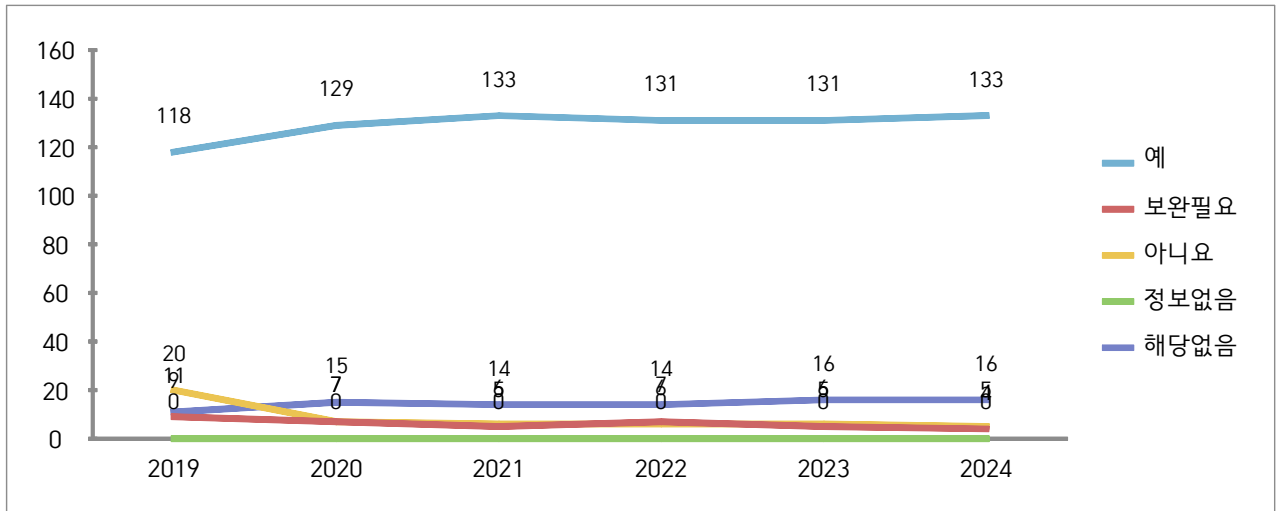
〈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통계표〉

구분	분야	답변결과					계
		예	보완필요	아니요	정보없음	해당없음	
1	인권경영체제의 구축	29	1	-	-	-	30
2	고용상의 비차별	17	-	-	-	-	17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14	-	-	-	2	16
4	강제노동의 금지	10	-	-	-	1	11
5	아동노동의 금지	5	-	-	-	9	14
6	산업안전 보장	16	1	-	-	-	17
7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5	1	-	-	4	10
8	현지주민의 인권보호	10	-	-	-	-	10
9	환경권 보장	12	1	5	-	-	18
10	소비자 인권 보호	15	-	-	-	-	15
합계		133	4	5	-	16	158

※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세부 답변결과 : 붙임1 참조

- (전년 대비 비교) 2023년도 ‘보완필요’ 및 ‘아니오’ 지표 각각 1건이 2024년에 개선되어 ‘예’ 지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
 ☞ **인권리스크는 전년 대비 하향 수준으로 도출**

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6개년(2019~2024) 결과 연도별 비교〉



- (2024년 개선사항①)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108번(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.) 문항의 경우, 2024년부터 구매 계약 시 “인권경영가이드라인 준수” 문구를 명문화하여 적용 완료
- (2024년 개선사항②)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112번(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.) 문항의 경우, 보안총괄실 직원 전원에 대하여 인권 관련 필수교육(4대 폭력예방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) 이수 완료
- (보완필요 문항①) 인권경영체계 구축 분야 6번(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.) 문항의 경우, 인권경영위원회와 별개로 외부전문용역을 통한 체크리스트 전면 재검토 필요
- (보완필요 문항②) 산업안전 보장 분야 97번(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.) 문항의 경우 장애인 직원의 편의를 위해 건물 입구에 경사로 설치 이외에 장애인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 노력 지속 필요
- (보완필요 문항③) 동일 분야 110번(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

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.) 문항의 경우, 관련 규정은 존재하나 자회사(시설관리단)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문 발송 등 실시 필요

- (보완필요 문항④) 환경권 보장 분야 141번(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,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.)의 경우, 인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대응체계 확립 검토 필요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의견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, 차년도 인권경영 목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제도개선* 추진
 - * 답변결과 ‘보완필요’, ‘아니오’로 응답된 지표 중심
 - ** 특히 ‘아니오’ 지표(총 5개)에 해당하는 ‘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, 환경재해 비상계획’ 지표는 차년도 기관 ESG경영 추진과 연계·반영해 개선 노력 예정
-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원 내 인권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관경영, 규정,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내부통제 적용을 통해 지속적 환류체계 구축

<단계별 인권경영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>

단계	도입기(2019)	발전기(2020~2023)	성숙기(2024~)
목표	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제도 구축	인권경영제도 실행 및 개선	인권경영제도 강화 및 공유·확산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권경영 관련 규범 제정 • 기본제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권영향평가 실시 •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규범·제도 개선 • 인권 교육 • 구제절차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규범·제도 강화 •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 • 연구원 특성에 맞는 기관운영지표 지속적 개발·보완

[심의안건 2호] 2024년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심의

□ 회의결과 : 원안 의결

- 연구원의 대표현안사업을 선정하고, 이 대표현안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
- '연구소 환경 개선사업'을 대표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담당부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총 2개 분야 9개 세부지표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
□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

- 연구원의 사업 중에서 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관련하여, '연구소 환경 개선사업'을 대표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인권침해 소지 여부 검토
- 2개 분야 9개 세부지표에 대해 인권영영위원회에서 평가·심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별 증빙자료 제출 및 경영기획실 1차 검토안 작성
-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주요결과

※ 인권영향평가는 '예'의 개수의 따른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는 현재 기관의 인권리스크 현황을 진단하고, 지속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도구로 활용

- 지속가능기술연구소에서 연구1동 리모델링 및 연구2동, 증축동 연구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 여부 검토 필요
- 연구직·행정직 및 보직의 유무를 불문하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연구소 환경개선사업 TF를 구성되어 구성원들의 고른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
- 실험실별 배기장치 등 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고려하고, 미화원 및 여성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확충 등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에 있어 차별의 요소 배제
- 연구소 경영지원단, 건설팀, 시공사,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으로 구성된 건축 TFT(7회)를 통해 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화장실, 휴게·식사 공간 등 처우를 고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·진동·분진 저감 방안을 강구해 내·외부 민원 해소 추진

- 2024년 공사 개시에 따라, 올해에는 임직원과 건설인력에 대한 안전 관련 지표 2개(8~9번)를 신설하여 **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 확보 상태 모니터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·점검** 노력

〈 2024년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통계표〉

구분	항 목	답변결과					계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연구소 환경 개선사업							
1	계획 수립	5	-	-	-	-	5
2	사업 개시	4	-	-	-	-	4
합계		9	-	-	-	-	9

※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세부 답변결과 : 붙임2 참조

☞ 모든 항목에서 '예' 응답 확보 (인권리스크 ↓)

○ 향후 추진계획

- 리모델링 건축 시행 단계에서 건설인력 및 인권침해 소지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, 안전 관련 미흡 및 불편사항 개선 노력